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순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2. 5. 27.

발의의원 : 황순자, 김대현,
김동식, 김태원,
박갑상, 배지숙,
윤기배, 윤영애,
이태손, 정천락,
홍인표 의원(11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의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법으로 기존의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기조를 보편적인 주거수준의 개선과 주거복지의 확대로 전환함에 따라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법제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이 조례도 제정되어 대구시 주거정책의 근거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주거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현장업무의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주거복지센터」와 관련된 현행 조례의 규정 중에서 사업비 지원과 위탁기간에 대한 규정 등 주거복지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 상위법의 입법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에 더욱 부합하는 제도로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10년단위로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의 내용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중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 대상을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3조를 인용하여 주거지원 필요계층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 제3항).

나. 주거기본계획 등 중요한 주거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과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있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과 탄력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함(안 제14조 제3항).

다.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등 현장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유사 위탁과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원 대상에 구·군에서 설치하는 주거복지센터까지 포함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증가하고 있는 주거복지의 수요와 시민들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비하는 등 능동적인 주거복지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주거기본법」,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다. 예산조치 : 관련부서 협의완료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7호 중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회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탁받은 기관”을 “주거복지센터 및 구·군의 주거복지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② (생략)</p> <p>③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6. (생략)</p> <p>7. <u>장애인 · 고령자 ·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u></p> <p>8. ~ 10. (생략)</p> <p>④ (생략)</p> <p>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p>	<p>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주거지원필요계층</u>----- ----- -----</p> <p>8. ~ 10.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 <u>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를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제20조(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제20조(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3년-----

-----.

③ (현행과 같음)

④ ----- 주거복지센터 및 구·군의 주거복지센터--.

⑤ ~ ⑦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략)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 9. (생략)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6. (생략)
7.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8.~10. (생략)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 ① ~ ④ (생략)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⑥ ~ ⑦ (생략)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8조(위탁계약 체결)

- ① (생략)
- ②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③~④ (생략)